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5214137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6. 4. 27.

판결 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표준도급 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제이투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4.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건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제1계약 (갑 제1호증)

- 공사명 : 역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착공년월일 : 2014. 5. 1.
-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 31.
- 계약금액 : 1,200,000,000원(부가세포함)

(2) 제2계약(갑 제2호증)

- 공사명 : 역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 착공년월일 : 2014. 5. 1.
-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 31.
- 계약금액 : 900,000,000원(부가세포함)

나. 계약보증서 발행

위 제1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4.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증금액 : 120,000,000원
- 보증채권자 : 원고
- 계약자(주채무자) : 소외 회사
- 보증인 : 피고
- 보증기간 : 2014. 4. 30. ~ 2015. 1. 31.

다. 보증사고 발생

소외 회사는 2015. 1. 17. 원고에게 경영악화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15. 5. 13. 서울중앙법원 2015하합62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을 연대보증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룬다.

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소외 회사 사이에 공사명을 '역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1. 31., 계약금액(공사대금)을 21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하여 21억 원의 공사대금을 12억 원, 9억 원으로 각 분리하여 공사금액 12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 및 공사금액 9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 바, 그 공사금액만을 달리하고 나머지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등은 모두 동일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5. 14. 피고에게 계약금액 12억 원,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 계약일 2014. 4. 30., 보증기간 2014. 4. 30.부터 2015.1. 31.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을 신청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계약보증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던바, 피고가 산출한 당시 조합원이던 소외 회사의 보증여유한도는 120,468,535원이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소외 회사의 시공능력공사액 범위 안에 있고, 그 계약보증금 또한 소외 회사 보증여유한도인 120,468,535원 이내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보증은 한도초과보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에 기한 보증금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타절기성검사일인 2015. 2. 13. 전후로 하여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대리인,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제1계약서 및 제2계약서 2개로 분리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제1계약서만을 제출하여 계약보증을 신청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사) 이에 피고는 2015. 2. 26.과 2015. 11. 18. 원고 및 소외 회사에,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계약보증을 체결하였기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아) 피고는 공사대금액수에 의해 계약보증금, 선급금,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한다. 또한 공사의 계약금액은 보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보증심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보증수수료 할증 여부, 담보비율 상향 여부 등 보증을 인수하더라도 그 조건을 달리하게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무릇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액수, 공사계약 체결일이나 실제 착공일, 공사기간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그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수급인측에서 이를 허위로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그 실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증인을 기망하였고,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증인이 이미 보증서를 교부하여 보증채권자가 그 보증서를 수령한 후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계약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보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보증채권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1967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스스로 공사대금이 21억 원임에도 이를 12억원과 9억 원으로 나누어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1계약 도급계약서만을 첨부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12억 원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착오에 빠져 보증금액과 보증수수료, 담보 등을 정하였고, 공사대금이나 공사규모는 이 사건 계약보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기망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계약보증은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로 취소되어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1계약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는 착오에 빠지리라는 것을 원고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내역에 관한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아직도 이 사건 계약보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